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관련법규

달서구 지역교통과

(생 략)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 대구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 1990. 11. 30 조례 제25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 제1항, 제3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동법 제8조 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과징금(동법 제24조의2 관련)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동법 제19조 제4항 관련)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동법 제30조 관련)
6.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4 관련)
7. 도시교통관련사업 시행자의 비용부담금(동법 제11조 제5항 및 제11조의2 제2항 관련)
8. 과징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관련)
9. 국고보조금
10.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12. 기타 잡수입

② 제1항 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 제8호의 과징금중 “대구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금액은 적립기간 만료된 이후부터 이회계의 수입으로 관리한다.

제 4 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제18조(징수교부금등) ① 시장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3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부담금, 제16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100분의 30을 당해 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을 징수 및 체납처분의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3. 8. 10 조례 제2873호>

제19조(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 법 제7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본조신설 1993. 8. 10 조례 제2873호>

1. 구 재산으로 관리하는 노폭 20m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2. 구 재산으로 관리하는 부지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제20조(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등) ① 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 8. 10 조례 제287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시의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 ③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신청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중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청·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 제정 1993. 12. 30 조례 제271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시의 보조금
4. 시의 교부금
5.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6. 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8.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출
2. 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등 관련된 필요 경비
4. 기타 주차관련 사업 소요 경비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되는 수입으로 한다.